

국내시장복귀계좌(RIA) 설명서

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※ [주의] 고객님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I. 핵심(요약)설명서

- 이 핵심(요약)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 (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설명서 본문 참조)

▣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| 구분 | 국내시장복귀계좌(RIA) | 일반위탁계좌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징 | '조세특례제한법'에 따라 고객님의이 보유하신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 이상 인출 없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,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 | 국내외 유가증권, 금융상품 등 매매를 위해 설정한 계좌 |
| 해외주식 가능여부 | 매도 가능, 매수 불가 | 가능(해외증권투자신청 시) |
| 국내주식 가능여부 | 제한적 가능(DR 제외) | 가능 |

▣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

□ 발생 가능한 불이익

-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또한 이 상품은 **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**

- 주식거래 시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**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**

- 해당주식 발행회사의 부도, 영업정지 등 감독기관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시 거래정지 또는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- 이 계좌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이 원화로 자동환전 되므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

- 해외주식 매도자금이 결제되는 날 원화로 자동환전되며, 환전된 날을 납입일로 합니다. 해당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며, 납입 1년 내 납입금액 인출이 있을 시 전액해지로 간주되어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'26.01.01부터 '26.12.31까지 국내시장복귀계좌 외 계좌에서의 페널티 상품(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)의 순매수 금액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이 축소되며, 해외주식 등² 순매수금액에 따라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양도소득 공제금액이 없을 수 있으니 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'26년 한해동안 상속 및 증여로 페널티 상품(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)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당 취득분은 해외주식, 해외주식대체자산 순매수 내역에 포함됩니다. 상속증여로 취득한 해외주식 등의 가액은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니 이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1 국내시장복귀계좌 외 계좌: 일반위탁계좌, 연금저축계좌, ISA계좌, IRP계좌, DC계좌, 신탁·일임 계좌 등 전 업권 계좌 모두 포함

2 해외주식 등에 포함되는 상품: 해외주식(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, DR, ETF 및 ETN), 해외주식대체자산(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투자 ETF 및 ETN, 집합투자재산의 60%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)

- 해외주식형 펀드 등 상품의 자동매수 설정으로 인한 매수 건도 순매수 금액에 포함되어 세제혜택이 축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투자위험등급 : **2등급[높은위험]**

- 일반주식 : **2등급(높은위험)**

- 투자(주의/경고/위험)종목, 관리종목 : **1등급(매우높은위험)**

위험등급의 의미: 당사는 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본 상품은 해외주식 매도 자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등급(높은위험)에 해당됩니다. (단, 국내주식 거래 시 투자주의, 투자경고, 투자위험 종목 및 관리 종목은 1등급(매우높은위험)상품에 해당됩니다.)

위험등급의 유의사항: 이 상품은 투자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며,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 (단, 주식 거래 시 투자주의, 투자경고, 투자위험 종목 및 관리 종목의 경우, 투자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.)

| 투자자 성향 | | 공격투자형 | 적극투자형 | | 위험중립형 | 안정추구형 | 안정형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상품 투자위험 등급 | 위험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6등급 |
| | 위험도 | 매우 높은위험 | 높은위험 | 다소 높은위험 | 보통위험 | 낮은위험 | 매우 낮은위험 |
| 유동성위험 | | 중도매도(환매불가) [] | | 중도매도(환매)시 비용발생 [] | | 중도매도(환매)가능 [○] | |

□ 유의사항

- 천재지변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,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,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의 경우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.
- 각 증권사별 1인 1계좌 개설 가능하나, 납입한도는 전 증권사 계좌의 한도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제한되오니 한도 설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해외주식 배당(현금,주식), 무상 등 권리 처리를 위해 근거계좌 지정이 필요하며, 국내시장 복귀계좌로 해외주식을 출고한 첫번째 계좌가 근거계좌로 자동 설정됩니다. 근거계좌는 국내시장복귀계좌 폐쇄시까지 계좌폐쇄 및 해외증권거래 해지 업무가 제한됩니다.
- 이 계좌는 해외주식 매수가 불가한 계좌입니다. 외화 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매수하기 위해서는 동일명의 일반 위탁계좌로 이체출금하여 매수해야 합니다.
- 해외주식 매도대금 결제 시 원화로 자동 환전되며, 매도대금이 결제되는 당일 자동 환전되기 전까지 해외주식 매도대금으로 국내주식 등 매수가 불가합니다.(통합증거금 불가)
- 주식 보유 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는 불가하며, 국내주식 유상청약의 경우 계좌 내 금전으로만 청약 가능합니다.
-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된 해외주식에서 배당(현금,주식), 합병 등 권리가 발생한 경우 계좌 내에서 운용이 불가하며, 유상청약, 매수청구 등 일부 권리의 처리 및 신청이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불가합니다.
- 이 계좌는 원화 입금, 국내주식 입출고(신주인수권증서에 한하여 출고 가능), 공모주청약, ELS청약 등 불가합니다.
- 이 상품은 투자세제지원을 위한 한시적 상품으로,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또는 제도개정 등에 따라 요건 및

투자가능상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▣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(1544-5000), 인터넷 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 내 고객의 소리(이용안내 > 고객센터/FAQ > 고객의 소리), 본사 민원 담당 부서(02-3276-4334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 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Ⅱ. 국내시장복귀계좌(RIA, Reshoring Investment Account) 설명서

당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분류하고 있으며, **본 상품은 2등급(높은위험)에 해당합니다.** 주식 거래 시 매매제도 및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국내시장복귀계좌 개요 및 특성

| | |
|------|---|
| 개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시장복귀계좌(RIA)는 개인투자자가 2025.12.23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,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입니다. •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개인 고객만 신청 가능합니다. (내국민대우외국인 및 외국인은 불가능) |
| 납입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 증권사별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하며, 총 납입한도는 5천만원입니다. 투자자가 5천만원 이내 범위에서 납입한도를 사전에 정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• 납입한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관리되며,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도 전 증권사 계좌의 한도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. • 최소 500만원부터 설정 가능하며, 1만원 단위로 감액 또는 증액 가능합니다. |

2. 국내시장복귀계좌 상품 설명

| | |
|-------|--|
| 출납/환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시장복귀계좌는 원화 입금이 불가하나, 외화입금은 당사이체 입금만 가능하고 외화출금은 당사타사이체 출금이 가능하며, 계좌주 동일명의로만 가능합니다. - 외화입금은 해외주식 권리,배당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납부 등 부득이한 경우 입금 가능합니다. • 해외주식 매도자금이 결제되는 날 원화로 자동환전되며, 환전된 날을 납입일로 합니다. 해당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며, 납입 1년 내 납입금액의 인출이 있을 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• 인출 가능 여부는 납입일 단위로 판단하며, 현재 국내시장복귀계좌 내 원화자산 잔고*가 납입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 인출은 가능합니다. * 원화자산 잔고 : 주식·전일 증가, 펀드·당일 기준가 • 초과분 인출 가능 금액은 현재 보유 중인 국내주식 및 펀드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펀드평가금액에 적용되는 기준가 미수신 시 출금가능금액 산출 불가로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• 해외주식 매도자금이 원화로 자동환전되며, 국내시장복귀계좌 계좌 내 외화는 실시간 직접환전은 불가합니다. |
| 해외주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고대상 해외주식 : 2025.12.23까지 보유한 해외주식(해외상장ETF포함,현지보관통화 대상 국가 제외, '25.12.23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입고/출고</p> | <p>이후 현지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입고 종목 제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고가능한 해외주식 산식 : MIN[25.12.23 기준 보유(대금결제 완료 기준) 해외주식의 수량, 국내시장복귀계좌로 입고 신청한 해외주식 수량 • 입고대상 해외주식 일 경우 설정한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입고 가능합니다. • 소수점 주식은 입고 불가하며, 정수로 전환된 온주로만 입고 가능합니다. • 국내시장복귀계좌는 해외주식 타사대체입고가 불가하여 해외주식거래신청이 되어 있는 일반 위탁계좌로 입고 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당사이체출고 처리해야 합니다. • 타 증권사로부터 출고된 해외주식은 '25.12.23(결제일) 이전 취득한 해외주식에 한정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로 입고할 수 있습니다. 매수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입고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된 해외주식에 대하여 매도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출고 가능합니다. • 매도한도 초과로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매도하지 못한 해외주식은 일반계좌로 자유롭게 출고 가능합니다. |
| <p>해외주식 매도/결제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는 해외주식 매수가 불가하며 입고된 해외주식 매도만 가능합니다. •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입고된 해외주식은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. • 권리 선반영 시 기준가가 없거나 선반영 전의 기준으로 계산된 종목일 경우 실제 매도주문 가능한도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• 대금결제 시 원화로 자동 환전 됩니다. 해외주식 매도대금이 결제되는 당일 자동 환전 되기 전까지 해외주식 매도대금으로 국내주식 등 매수가 불가합니다.(통합증거금 불가) • 매도가능금액은 납입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, 매도가능금액은 '매도주문 전일 종가 X 주문일의 최고고시환율' 로 계산됩니다. 매도금액이 납입한도를 초과할 경우 주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• 예약주문의 경우 납입한도 초과로 인해 발송 시점에 주문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문 입력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• 매도대금 입금시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며, 현지 은행 및 한국 예탁결제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. • 외국과의 시차, 송금 및 수령 등에 소요되는 기간,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정에 따라 매도대금의 입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배당금, 배당주 등도 당사 국내시장복귀계좌로의 입금, 입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 특히, 해외 OTC(장외시장)주문의 경우 현지 결제 참여자 및 결제참여기관 사정으로 결제 지연 및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| <p>국내시장 복귀계좌 내 투자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금은 해외주식 매도대금으로 한정됩니다. • 투자대상자산은 국내상장주식, 국내주식형펀드(ETF포함), 예탁금에 한정되며, 시행령, 제도 개정, 당사의 반영일정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가능종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 - 국내상장주식 : 유가증권, 코스닥,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(DR제외) - 국내주식형펀드 : 설정·설립 1개월이 경과한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80%이상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. 단,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이 편입되지 않을 것 • 국내주식은 신주인수권증서에 한하여 출고 가능하며, 입고는 불가합니다. |
| <p>권리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(현금·주식), 무상, 기업분할은 국내시장복귀계좌에 지급하더라도 운용이 불가하며 권리 지급 시 근거계좌로 처리됩니다. •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합병, 종목교환, 전환 등 기존 주식의 출고와 함께 새로운 주식 또는 현금이 지급될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운용이 불가합니다. •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권리로 입금된 외화금액은 계좌 내에서 운용이 불가하오니,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. •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외화 예수금이 수반되는 워런트 청약이 불가하며, 이에 따라 워런트 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근거계좌로 지급됩니다. |

| | |
|------|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의 매수청구권, 공개매수 등 일부 권리의 신청이 제한됩니다. •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경우 해당 해외주식을 동일명의 일반 위탁계좌로 출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. • DR 보관수수료, 미국 Section871(m) 세법 규정에 따른 현지세금 등 외화금액을 출금하는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출금되며, 국내시장복귀계좌가 해지 및 계좌폐쇄 된 경우에는 근거계좌에서 출금됩니다. |
| 수수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주식매도 및 국내주식 매수/매도 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일반 위탁계좌의 수수료율에 따르니 각 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| 특별해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좌보유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있는 경우,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납입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여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공제받은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. - 부득이한 사유 : 계좌보유자의 사망, 인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천재지변,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.요양이 필요한 상해.질병 발생 |
| 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주식 시세 및 외화증권거래 신청이 불가합니다. • 해외주식 배당(현금,주식), 무상 등 권리 처리를 위해 근거계좌 지정이 필요하며, 국내시장복귀계좌로 해외주식을 출고한 첫번째 계좌가 근거계좌로 자동 설정됩니다. 근거계좌는 국내시장복귀계좌 폐쇄시까지 계좌폐쇄 및 해외증권거래 해지 업무가 제한됩니다. • 과세 특례에 따른 사항 외 미국 납세자 제한, 권리 등 해외주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화증권거래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• 국내주식의 권리(배당 등) 및 해외주식의 권리(합병 의제배당으로 인한 양도소득인 경우 제외)로 원화 제세금을 원천징수 할 경우 원화 예수금이 제세금 금액보다 적으면 국내시장복귀계좌에서 원화미수금이 발생하오니 미수금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때 미수금에 대한 연체로는 다른 계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|

3.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

| | |
|---------|---|
| 과세특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해외주식 매도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이 차등 부여됩니다. - '26년 5월까지 매도 100%, '26년 6월~7월 매도 80%, '26년 8월~12월 매도 50% • 납입 1년 내 인출이 없어야 하기에 '27.5월 양도세 신고 시점 이전에 중도 인출 시 공제 신청 불가합니다. (납입 1년이 경과한 금액과 납입 누적액을 초과하는 초과분 인출은 허용) • 반면, '27.5월에는 인출 사실이 없으나, '26년 하반기에 납입한 금액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인출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됩니다. (투자자가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신고.납부) • 납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금액을 일부 인출 시 전액해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|
| 공제금액 계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제금액은 국내시장복귀계좌 내에서의 해외주식의 매도금액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*에서의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의 매수·매도금액을 종합 고려하여 산출됩니다. -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: 일반위탁계좌, 연금저축계좌, ISA계좌, IRP계좌, DC계좌, 신탁·일임계좌 등 모두 포함 •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의 매수·매도금액은 2026년 중 거래 시점에 따라 금액이 반영되는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. - '26.1월~5월까지 순매수금액의 100%반영, '26.6월~7월 순매수금액의 80%반영, '26.8월~12월 순매수금액의 50%반영 -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세제혜택 차감 상품 |

- ① 해외주식 :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해외주식, DR, ETF 및 ETN
- ② 해외주식대체자산 : 국내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해외투자 ETF 및 ETN, 집합투자재산의 60%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

| 구분 | | 설명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---|--|--|
| 해외주식 | | 해외시장에 거래되는 주식, DR, ETF 및 ETN (베트남 등 현지보관통화 국가 제외) | 양도세 과세대상 |
| 해외주식 | 국내상장 해외ETFETN |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종목의 가격 수준을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ETFETN | 당사 전산 개발 및 제도 개정 등에 따라 해당되는 종목이 달라질 수 있음 |
| 대체자산 | 해외주식형 펀드 | 집합투자재산의 60% 이상을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(설립·설정 1개월이 경과할 것) | |

※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의 매수매도는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

• '26년 1월1일부터 '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계좌에서 결제한 페널티 상품(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)의 순매수금액에 비례하여 세제혜택이 축소되며, 순매수금액에 따라 국내시장복귀계좌 양도소득 공제금액이 없을 수 있으니 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'26년 한해동안 상속 및 증여로 페널티 상품(해외주식 및 해외주식대체자산)을 취득한 것이 있으면, 해당 취득분은 해외주식, 해외주식 대체자산 순매수 내역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• 공제순서는 양도소득 손익통산 → 기본공제 →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 순으로 계산*하되, 국내시장복귀계좌 공제금액은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계산하여 마지막에 차감합니다.

-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0-0-1 :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방식은 양도소득금액 - 기본공제 -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방식으로 계산

[예시] 각 시점별 해외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수·매도한 투자자의 RIA 양도소득 공제금액 계산방법

| 구분 | '26.5월까지 | '26.6월~7월 | '26.8월~12월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기간별 가중치 | 100% | 80% | 50% |
| RIA내 해외주식 매도 (매도만 가능) | 3,000만원 | 1,000만원 | 1,000만원 |
| (필요경비) | 1,000만원 | 400만원 | 400만원 |
| (양도소득금액) | 2,000만원 | 600만원 | 600만원 |
| RIA외 계좌에서의 거래 (매수·매도 모두 가능) | | 2,000만원 | |
| 매수 | | | |
| 매도 | | | 1,000만원 |

[1단계: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공제액(조정 전) 계산]

- 해외주식 매도금액 = 3,000만원 X 100% + 1,000만원 X 80% + 1,000만원 X 50% = 4,300만원
- 조정 전 양도소득금액 공제액 = 2,000만원 X 100% + 600만원 X 80% + 600만원 X 50% = 2,780만원

[2단계: RIA 외 계좌에서의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 계산]

- 해외주식 등 순매수금액 = 매수2,000만원 X 80% + 매도 △1,000만원 X 50% = 1,100만원

[3단계: 최종 공제금액(조정 후) 계산]

- 최종 공제액 = 조정 전 공제액 X $(1 - \frac{RIA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(음수인 경우,0)}{RIA내 해외주식 매도금액})$

공제금액
계산방식
예시

$$= 2,780\text{만원} \times \left(1 - \frac{1,100}{4,300}\right) = 2,069\text{만원}$$

[4단계: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]

· 세액 = (양도소득금액 - 양도소득 기본공제 - RIA 최종 공제액) X 22%
 = (3,200만원 - 250만원 - 2,069만원) X 22% = 193.855만원*

* RIA 공제 적용 전 세액 (3,200만원 - 250만원) X 22% = 649만원 대비 약 455만원 경감

4. 통지

| | |
|------|---|
| 통지시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매도성립 결과 통지 및 권리 통지 등은 주식거래 및 외화증권거래 통지에 따릅니다.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· (거래의 통지)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. · (월별 거래현황 통지) 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, 손익내역, 월말잔액, 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. · (반기별 계좌잔액·잔량현황 통지) 회사는 반기 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·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. · (수시통지) 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, 증권카드의 재발급, 지점, 그 밖의 영업시간 이관·이수 및 통합계좌 에서의 해제 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, 현금 등의 잔액·잔량을 지체없이 통지합니다. <p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고객께서 통지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 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, 통지 내용이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 고객센터(1544-5000)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</p> |
|------|---|

5. 기타 유의사항

-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1억원"까지(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금융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
-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이 계좌는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와의 위탁매매 또는 매매 계약을 통해 고객이 직접 해당 계좌를 운용합니다.
- 이 계좌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됩니다.
- 이 계좌는 국내주식 증거금을 100%로 운용되는 계좌이나 상품의 결제일 차이에 따라 미수 발생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국내시장복귀계좌 : 원화 입금 불가 계좌)
- 여러 번에 걸쳐 매도금액이 납입된 경우, 1년 경과한 납입금액만 따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이 계좌는 계좌 단위로 관리되므로 일부 금액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전체 계좌가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, 부분적인 세제 혜택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본 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상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
- 가입하시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> 국내시장복귀계좌는 국내시장복귀계좌 약관이 적용되며, 가입하시기 전 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설명서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6.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 안내

| | |
|------|---|
| 행사요건 | •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 28 조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,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제공 또는 청취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
| 자료열람 | • 자료의 열람은 열람의 목적, 범위,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내접,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열람을 요구한 날부터 6 영업일 이내 열람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회사는 자료를 10 년(일부 자료는 5 년)동안 보관합니다. • 단,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열람을 연기,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. |

7.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행사요건 | 고객은 회사가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|
| 대상 금융상품 | 고객과 회사간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상품에 대하여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 |
| 해지가능기간 및 요구방법 | 고객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. |
| 해지절차 | 회사는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며 통지 내용(수락 또는 거절과 거절사유)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. |

8. 청약철회권 행사에 관한 안내

- 이 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대상상품이 아닙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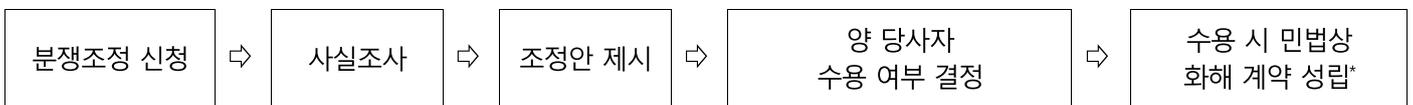
9. 당사 민원처리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



* 민원처리결과에 따른 불만(민원)이 있는 경우,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| 접수처 | 접수방법 | 비고 |
|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자민원접수 | 홈페이지(securities.koreainvestment.com) | 이용안내>고객센터/FAQ>고객의 소리 |
| 영업점민원창구 | 서면(민원신청서) | - |
| 본사 민원담당부서 | 이메일(minwon@koreainvestment.com), 우편, FAX(02-3276-4332) | 소비자지원부(02-3276-4334) |

10. 외부기관(금융감독원 등)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안내



*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수용 시에는 재판상 화해 효력 발생

| 접수처 | 연락처 | 바로 가기(인터넷)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금융투자협회 | 02-2003-9426 | (http://www.kofia.or.kr/wpge/m_77/sub040102.do) |
| 한국거래소 | 02-1577-2172 | (http://sims.krx.co.kr/p/Drct0201/) |
| 금융감독원 | 1332 | e-금융민원센터 링크(http://www.fcsc.kr)(PC) |

| | |
|-------------|---|
| 판매직원 | 이 상품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과 이 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. |
| 확인사항 | 한국투자증권 _____ 지점 (☎ _____) 직위: ____ 직원명 : _____ (서명) |